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421호
----------	--------

제출년월일 2024. . .
제출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관내 거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2023년 11월 발표된 행정안전부 승인통계 기준¹⁾에 따르면, 관내 거주 외국인주민은 33,590명으로 김포시의 총인구 491,249명 중 6.8%에 달하는 실정으로 이들에 대한 행정적 뒷받침의 양적 확대와 질적 심화가 요구됨.
- 이에 따라, 본 조례에서 '상호문화' 라는 정책방향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국인에 대한 이주민의 언어와 문화 교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 김포시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전반을 개정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이주배경청소년 및 상호문화주의 등 용어 정의 추가(안 제2조)
- 나. 상호문화주의 정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추가(안 제4조)
- 다. 지원 대상으로서,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과 재해·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인도적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지원 대상을 추가(안 제5조)
- 라. 이주배경청소년 및 상호문화주의 정착을 위한 지원범위, 관련 축제·행사 참석자에 대한 무료 교통수단 및 체험행사 편의 제공 등 신설(안 제6조)
- 마. 김포시 외국인주민 정책 자문위원회 정비(안 제7조)
- 바. 상호문화거리의 지정 및 조성 근거 신설(안 제12조)

1) 승인번호 제110025(2023.11.)호 행정안전부 승인통계 「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나. 관계 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불임

다. 예산조치 : 2024년도 본예산 반영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12. 28. ~ 2024. 1. 17.(20일)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결과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다문화과,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나) 경 기 도 : 가족다문화과, 외국인정책과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421호
----------	--------

제출년월일 2024. . .
제출자 가족문화과장

1. 제안이유

- 관내 거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2023년 11월 발표된 행정안전부 승인통계 기준¹⁾에 따르면, 관내 거주 외국인주민은 33,590명으로 김포시의 총인구 491,249명 중 6.8%에 달하는 실정으로 이들에 대한 행정적 뒷받침의 양적 확대와 질적 심화가 요구됨.
- 이에 따라, 본 조례에서 '상호문화'라는 정책방향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국인에 대한 이주민의 언어와 문화 교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 김포시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전반을 개정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이주배경청소년 및 상호문화주의 등 용어 정의 추가(안 제2조)
- 나. 상호문화주의 정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추가(안 제4조)
- 다. 지원 대상으로서,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과 재해·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인도적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지원 대상을 추가(안 제5조)
- 라. 이주배경청소년 및 상호문화주의 정착을 위한 지원범위, 관련 축제·행사 참석자에 대한 무료 교통수단 및 체험행사 편의 제공 등 신설(안 제6조)
- 마. 김포시 외국인주민 정책 자문위원회 정비(안 제7조)
- 바. 상호문화거리의 지정 및 조성 근거 신설(안 제12조)

1) 승인번호 제110025(2023.11.)호 행정안전부 승인통계 「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나. 관계 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불임

다. 예산조치 : 2024년도 본예산 반영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12. 28. ~ 2024. 1. 17.(20일)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결과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다문화과,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나) 경 기 도 : 가족다문화과, 외국인정책과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지역사회 적응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3.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4.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5. “이주배경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6.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상호문화주의”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내·외국인 주민 간, 수동적 수용을 넘어 적극적 소통을 통해 공유하고 만들어 가는 문화를 지향함을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호문화주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문화이해 및 교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1.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제6조(지원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등
3. 외국인주민에 대한 한국어 및 직업교육의 실시 및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 상담
4.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5.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6.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7.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7.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문화, 예절 및 한국어 교육 지원
2.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친교 활동 및 교과지도 지원
3. 정서 안정을 위한 각종 상담 지원
4. 자립생활을 위한 취업 지원 및 연계
5. 이중언어발달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상호문화주의 정착을 위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외국인 주민 간 인식개선을 위한 축제·행사 개최 및 프로그램 지원

2. 내·외국인 주민 간 문화이해를 위한 언어, 예술, 역사, 문화 교육 지원
 3. 내·외국인 주민 간 정서적 이해를 위한 외국인주민 등의 가족 한국초청 및 내국인의 해외 탐방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시장은 제4항제1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료 교통수단 운행 및 무료 체험행사 실시 등
 2. 홍보기념품 등의 지급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상장의 수여
 - 가. 전시회, 경진회 등에서 심사에 의거 입선한 자
 - 나. 학술, 예술, 체육 및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제2장 외국인주민 정책 자문위원회

제7조(김포시 외국인주민 정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포시 외국인주민 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조정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교육청·경찰서·고용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부서 책임자

2.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기관 · 단체의 관계자
 3. 교수 · 상공인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1년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중에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의 · 조정 사항을 처리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3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사업추진 등

제12조(시책사업 추진)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 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 · 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 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외국인주민의 생활권 확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을 위해 지역 내 상호문화거리 등을 지정 및 조성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에 제 6조와 관련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세계인의 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로 지정된 세계인의 날과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6조(포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가족문화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명	가족문화과장 최신
	팀장 직위·성명	상호문화팀장 황경애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김완병(☎560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외국인주민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등을 위해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23.9.27.>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의 분소로 상호문화교류센터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9.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센터 및 분소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9.27.>

1.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110번길 52
2. 상호문화교류센터: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2250번길 24-11

[제목개정 2023.9.27.]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노동, 법률, 생활 상담
2. 교육, 문화, 체육 활동 지원
3. 권익보호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상호문화교류에 관한 사항 <신설 2023.9.27.>
5.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3.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4.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①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등
3. 외국인주민에 대한 한국어 및 직업교육의 실시 및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 상담
4.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5.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6.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7.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7.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제7조(협의회 설치)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교육청·경찰서·고용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부서 책임자
2.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와 교수·상공인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 : 연 2회 이상
2. 임시회의 :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9.29.>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제14조(자문회의 설치)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자문회의의 위원은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중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5조(자문회의 기능)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회의) ① 자문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사업추진 등

제17조(시책사업 추진)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9조(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가 제6조와 관련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세계인의 날) ① 시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김포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1조(포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
-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
-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2조제3항제2호
-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4조제4호

나. 비용 발생 요인

-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 외국인복지센터 통역지원
- 외국인주민 상담지원
-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
- 상호문화교류센터 운영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 다문화소통 프로그램 지원
-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 추계 기간 : 2024년 ~ 2028년

-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단위: 천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합 계		742,322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406,218	2024년
	운영비	117,816	
	사업비	218,288	

※ 세계인큰잔치 70,000천원 포함, 전액 시비

-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단위: 천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합 계		38,660	
외국인복지센터 지원	강사비(청소년 한국어 교육)	36,000	2024년
	운영비	2,660	

- 외국인복지센터 통역지원

(단위: 천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합 계		136,000	
외국인복지센터 통역지원	인건비	135,000	2024년
	운영비	1,000	

- 외국인주민 상담지원

(단위: 천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합 계		18,000	
외국인주민 상담지원	인건비	17,523	2024년
	운영비	477	

-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단위: 천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합 계		12,000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강사비	9,600	2024년
	사업비	2,000	
	운영비	400	

-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단위: 천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합 계		7,000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생계비	3,000	2024년
	의료비, 장제비	4,000	

-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단위: 천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합 계		10,000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강사비	7,500	2024년
	사업비	600	
	운영비	1,900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

(단위: 천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합 계		227,100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	운영비	9,100	2024년
	사업비	138,000	
	인건비	80,000	

- 상호문화교류센터 운영

(단위: 천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합 계		70,994	
상호문화교류센터 운영	인건비	33,723	2024년
	운영비	37,271	

※ 하반기 개소 예정으로 6개월 운영비 책정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단위: 천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합 계		863,160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163,700	2024년
	운영비	44,000	
	사업비	655,460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단위: 천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합 계		260,351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인건비	221,310	2024년
	사업비	9,113	
	운영비	29,928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단위: 천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합 계		68,200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인건비	67,000	2024년
	운영비	1,200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단위: 천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합 계		40,590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인건비	39,190	2024년
	운영비	1,400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단위: 천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합 계		24,500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강사비	21,120	2024년
	운영비	3,380	

※ 국비 지원 한국어교육 사업

-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단위: 천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합 계		3,290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인건비	2,700	2024년
	운영비	590	

-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단위: 천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합 계		18,000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강사비	14,100	2024년
	운영비	3,900	

※ 도비 지원 한국어교육 사업

- 다문화소통 프로그램 지원

(단위: 천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합 계		15,067	
다문화소통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14,600	2024년
	운영비	467	

-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단위: 천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합 계		13,333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강사비	2,800	2024년
	운영비	10,533	

-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

(단위: 천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합 계		7,500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사업비	5,250	2024년
	운영비	2,250	

-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단위: 천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합 계		14,742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사업비	14,742	2024년

-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단위: 천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합 계		7,500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비	7,500	2024년

나. 비용추계결과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총 소요액	2,618,309	2,769,982	2,853,082	2,938,674	3,026,835	14,206,882
인건비	1,257,484	1,329,943	1,369,842	1,410,937	1,453,265	6,821,471
운영비	268,272	314,709	324,151	333,875	343,891	1,584,898
사업비	1,092,553	1,125,330	1,159,089	1,193,862	1,229,679	5,800,513

다. 재원조달방안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

○ 기획담당관 협의필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복지국 가족문화과장 최 신 상호문화팀장 황경애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계	
세 입							
세 출	2,618,309	2,769,982	2,853,082	2,938,674	3,026,835	14,206,882	
국비	797,401	821,323	845,963	871,342	897,482	4,233,511	
도비	115,974	119,453	123,037	126,728	130,530	615,722	
시비	1,704,934	1,829,206	1,884,082	1,940,604	1,998,823	9,357,649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913,375	940,776	969,000	998,070	1,028,012	4,849,233
	보조금	913,375	940,776	969,000	998,070	1,028,012	4,849,233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704,934	1,829,206	1,884,082	1,940,604	1,998,823	9,357,649
	지방세수입	1,704,934	1,829,206	1,884,082	1,940,604	1,998,823	9,357,649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